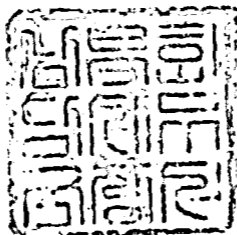


---

# 남북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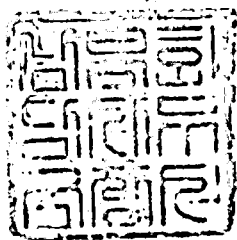
4853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

# 남북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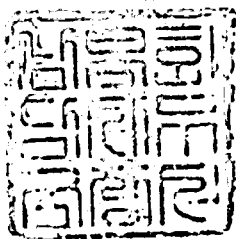


4853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 남북합의서



4853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100

100

## 목 차

### 남북정상회담

-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 9
-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 11

### 남북고위급회담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21
-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28
-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 30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 35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	43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	51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65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70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75
■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	80
■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84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	88

---



---

## 남북조절위원회

- 남북공동성명(72. 7. 4) ..... 97
-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 101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104

## 남북적십자회담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 111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에 관한 합의서 ..... 121

## 남북체육회담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 131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36
-

- 
- ▣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 141
  -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46
-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

---

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각기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합의한다.

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금요일) 오전 10시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다.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9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홍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1994년 7월 2일 발효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0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 ①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단독회담으로 한다.
- ②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 3.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5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 4.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 파견

- ① 쌍방은 경호, 의전, 통신,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13일부터 7월 16일(3박 4일)까지 평양에서 가진다.

이에 앞서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 ②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3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날 때까지 체류한다.

- ③ 남측의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5. 왕래절차

- ①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에는 명단을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대표단은 북측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

## 6.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 7.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 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시설을 설치·제공한다.

##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한다.

## 11. 회담보도

①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

---

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 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12.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 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개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994년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대표 윤여준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 대표 백남준



남북고위급회담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

---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관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

---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4 장 수 정 및 발 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

---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

---

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

---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 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 제 2 장 내부분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 제 3 장 비방 · 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

## 제 4 장 파괴 · 전복 행위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 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 ·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 · 비호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

---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  
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 제 7 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  
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  
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  
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 제 8 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 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

---

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에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뿐만 아니라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

---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 제 3 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

##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 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 제 5 장 협의·이행기구

---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

---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 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  
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  
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  
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

---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관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

---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

---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 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 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
-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

---

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

---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

---

## 제 4 장 수정 · 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 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

---

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협의한다.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

---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



---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 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산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3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



---

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관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

---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1990년 7월 26일 발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회담 명칭

회담 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 (이하 '회담' 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 2. 회담 날짜

제1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

하며, 제2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매 차 회담 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 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장급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6. 회담 수행원과 취재기자

회담 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 7. 회담 형식

---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회담은 쌍방 대표단 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총리 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 9. 회담 기록

회담 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 10. 회담 보도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서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 12. 신변안전보장

①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회담 5일 전에 관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14. 남북 왕래절차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 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④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 공항)-평양(순안비행장) 사이를 직행한다.

⑤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

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 15. 기자의 취재활동



---

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 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 일정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 17. 편의제공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 기간중 1일 2회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

---

---

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한호

북 남 고 위 급 회 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백남준

남북조절위원회



##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발효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

---

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 1. 직통전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한다.

### 2. 직통전화 설치장소

직통전화는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의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매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 4.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 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한다.

####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판문점 상설 연락 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 7. 비밀보장

---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 8.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	울	평	양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조직지도부장	김영주

1972년 7월 4일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72년 11월 4일 발효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 
-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 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 마.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

---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이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이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 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관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

---

1.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남북조절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72년 11월 4일

남 북 조 절 위 원 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이 후 락 부 장

남 북 조 절 위 원 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 영 주 부 장



남북적십자회담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1972년 8월 11일 개최된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및 본회담 개최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각각 초청자의 입장과 원칙에서 상대측의 대표단(대표단에는 대표, 자문위원 및 수행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과 기자단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타 모든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 1. 본회담 첫 회의 문제

---

제1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는 첫번 회담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상호 초청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 2. 신변보장

1)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 중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2)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중 그들의 문서, 사진, 필름, 녹음 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필요한 휴대품들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3) 쌍방은 관계당국이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신변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전원을 매 번 무사히 돌려 보낼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상호 왕래 개시 1주일 전에 발표하고

---

그 성명문본을 교환한다.

### 3. 왕래절차

- 1) 쌍방은 자기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명단(성명, 성별, 직책)과 사진을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후 변동되는 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문서로 넘긴다. 상대측에 넘기는 왕래 인원 명단에는 적십자사 책임자가 서명한다. 추후 변동되는 명단에는 위임에 의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할 수 있다.
- 2) 대표는 자기측 적십자사 책임자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자문위원, 수행원 및 기자단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 3) 쌍방의 대표단과 기자단은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그 통과 및 접수시간은 쌍방이 협의 확정한다.
- 4)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

- 
- (1) 쌍방은 쌍방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한 업무를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담당 수행하게 하며, 이들의 명단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한다.
  - (2)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일체의 업무는 쌍방 적십자사가 전담 수행한다.
  - (3) 쌍방의 모든 차단소들은 왕래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 (4) 상대측 인원을 접수할 때에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가 있는 구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초청측이 상대측으로부터 3일 전에 넘겨받은 명단에 의거하여 상대측 인원들의 신분증명서를 대조 확인한 후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초청측은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한 접수된 인원명단을 상대측에 넘겨준다.
-

---

돌아갈 때에는 접수된 인원명단에 의거하여 상호 대조확인한다.

#### 4.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1) 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정 및 회담일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2)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은 각각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 5. 표 지

- 1) 쌍방의 대표단은 각기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을 착용한다.
- 2) 쌍방의 기자단은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과 자기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색 바탕에 '기자'라는 글자를 박은 완장을 착용한다.
- 3) 쌍방의 교통수단에는 적십자기만 달도록 한다.

#### 6. 장비 및 소지품

- 1) 쌍방은 무선송신기를 제외한 통신연락, 회의기록, 문건작성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기술자재와 구급약품, 간단한 휴대용

---

의료기구, 사무용품 및 기타 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2) 쌍방 인원들은 상대측 지역에 체재중의 생활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 출판물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3) 쌍방 인원들은 무기, 폭발물 등 유해위험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 7. 교 통

쌍방은 각기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에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교통수단을 보장한다.

## 8. 통 신

- 1) 쌍방은 대표단 및 기자단을 위하여 남북 사이에 총 20회선의 유선전신전화선을 보장한다.
- 2) 쌍방은 본회담의 진행과 관련한 통신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단체 중앙기관 사이에 직통전화 2회선을 상시 개설하며, 매 차의 회담 기간에는 상대측 지역에



---

가 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1회선은 회담장, 1회선은 숙소)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선들을 판문점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 4) 남북 사이에 연결되는 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통신기술 실무자 간에 협의한다.
- 5)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 9. 회담장 외의 활동

쌍방은 체재기간중 상대측 인원들을 각종 참관에 안내할 수 있다.

## 10. 회담장 시설

- 1) 회담장 시설은 초청측에서 회담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며, 회담장에서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 2) 초청측은 매 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탁자

---

양끝 중심에 적십자기를 놓는다.

### 11. 회의기록

- 1) 쌍방은 회의기록을 각기 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 2)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 기관에 중계할 수 있도록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한다.

### 12. 회의공개 여부

- 1)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쌍방 합의시 공개로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본회담의 첫날 회의는 공개로 한다.

### 13. 보도진 문제

- 1) 쌍방은 회담 취재에 필요한 내신 보도진의 수를 20명으로 한다.
- 2) 쌍방은 매 차 회담시 외신기자들을 초청측이 초청하며, 외신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회담취

---

재 편의를 제공한다.

- 3) 쌍방은 보도에서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14. 회담 운영 형식

- 1)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다.
- 2) 회의발언은 수석대표가 하되, 필요시에는 여타 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 3) 쌍방은 자문위원의 발언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기로 하였다.

#### 15.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쌍방은 합의문건을 공동으로 작성 서명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 16. 편의제공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체재기

---

- 
- 간중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 쌍방은 회담을 위하여 왕래하는 인원수를 각각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내신보도진 20명으로 한다.

18. 본회담 일시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한다.

1972년 8월 11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적십자회 대표단
수석대표 김연주	단장 김태희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년 8월 22일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대한적십자사측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한다.

###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 1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한다.
- (2) 예술공연단(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한다.
- (3)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한다.
- (4)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한다.

###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 4. 방문시기

---

교환방문 시기는 9월 20일~9월 23일(3박 4일)로 한다.

5. 방문지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6. 상봉의 주선과 범위

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 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나. 공연회수는 총 2회로 한다.

---

## 8. 공연내용

가. 공연은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다.

## 9. 공연 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 답사

가. 공연 프로그램은 방문 3일 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 인원 2명과 공연기술 인원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 답사토록 한다.

## 10. 공연시작

120분 정도로 한다.

## 11. 신변안전보장



---

방문 7일 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 12. 수송 및 통신

가. 판문점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방문기간중 서울-평양간 행낭을 1일 2회 운용한다.

다. 방문기간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20 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 13.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 14.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남북  
적십자회담의 관례에 따른다.

15. 방문자 명단 통보 시기

가.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 전에 상대  
측에 통보한다.

나.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16. 고향방문단 명단 작성 양식

가.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자 난에는 방문자  
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방문대상자와  
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 난에는 방문  
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진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17. 예술공연단, 취재기자단, 지원인원 명단작성  
양식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

성명, 성별, 직위, 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 18. 방문자의 표지 및 증명서 소지

가.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지원인원은 적십자회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한다.

나. 기자는 방문단 표지 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를 준용한다.

다. 방문자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 19. 체류일정

방문 7일 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결정한다.

#### 20. 기 타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나.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 
- 초청측에서 제공한다.
- 다. 초청측은 공연 개막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마.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1985년 8월 22일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송영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단장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박영수

남북체육회담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 (약자 : KOR)로 한다.

### 2. 선수단 단기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

넣는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 4.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한다.

### 5. 선수단 구성

가.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한다.

나. 국제탁구연맹 규칙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단장은 북측에서 맡는다.

라.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6. 선수훈련

가. 대회 현지에서 실시한다.

---



---

나. 훈련에 참가할 단일팀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다. 훈련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한다.

## 7. 선수단 경비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8.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

---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 사항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9.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총 식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김 형 진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8항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규정에 의거,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기 능

가.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 
-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 선정에  
관한 사항
    - (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  
요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라) 참가신청서 제출 후 선수단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장  
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

(4)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  
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탁구협회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탁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탁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 2 구 성

가. 실무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  
한다.

---

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3. 운 영

가. 실무위원회는 탁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 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 실무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과 북측지역 '통일각' 에서 번갈아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합의제로 한다.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 바.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4.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 한 민 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충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김형진



##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 (약자 : KOR)로 한다.

### 2. 선수단 단기

---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에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 4. 선수선발

가. 평가전을 기초로 하여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에서 협의·결정한다.

나. 평가전은 1991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완료하며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다. 평가전은 서울과 평양 등 남북의 지역에서  
각 1회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평가전 개최경비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5. 선수단 구성

---

가. 늦어도 1991년 5월 초까지 완료한다.

나. 국제축구연맹 규칙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다. 단장은 남북에서 맡는다.

라.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6. 선수훈련

가. 남북을 왕래하며 1회씩 번갈아 실시한다.

나. 훈련에 참가할 쌍방 선수단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다.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한다.

## 7. 선수단 경비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8. 신분안전보장

훈련과 평가전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계인원

---

---

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은 남과 북의 관계당국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한다.

## 9.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가.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의 남북왕래와 관련된 사항
  - (4) 선수단 단복 및 대회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대회참가에 따르는  
    제반사항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10.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   한   민   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장   충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김   형   진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9항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규정에 의거,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기 능

가.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평가전을 기초로 협의에 의한 선수  
선발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

---

에 관한 사항

-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통신 등 제반 편의 사항
  -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 (마) 선수훈련 때의 기자단 교환에 관한 사항
  - (바) 평가전과 선수훈련 때의 선수단 및 관계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 선정에 관한 사항
  - (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요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단일팀으로의 대회참가 확인통보 및 선수명단 제출에 관한 사항
  - (라) 단일팀으로의 대회 참가 확인 통보 후 선수단의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

---

강구에 관한 사항

(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

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3) 선수단 구성·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남북왕래와 관련한 사항

(4)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  
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  
사항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의 참가확인을 한 이  
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6회 세계청소  
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



---

쌍방 축구협회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축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 2. 구 성

가. 실무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3. 운 영

가. 실무위원회는 축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

- 
- 관련한 제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나. 실무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과 북측지역 '통일각' 에서 번갈아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합의제로 한다.
-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바.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4.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及 展 展 展 展 展  
 行 五 加 家 告 昌 厚 告 展 昌 告

知 得 后 后 后 后 后  
 后 展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展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展 展 展 展 展  
 行 五 加 家 昌 昌 厚 告 展 昌 告

知 得 后 后 后 后 后  
 后 展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

1999년 2월 13일 1999년 2월 13일

1999년 2월 8일 1999년 2월 8일

1999년 2월 8일 1999년 2월 8일

(02) 730-3655

1999년 2월 8일 1999년 2월 8일

---

1999년 2월 8일 1999년 2월 8일

---